

제30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2026. 4. 13. ~ 4. 17.(5일간)

<2026. 4. 17.(금) 10:00 제2차 본회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의안건에 대한
심 사 보 고 서



오산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목 차

연 번	의안 번호	부 의 안 건 명	발의자 (제출부서)	심사결과	페이지
1	9-791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도현 의원	원안가결	1
2	9-777	오산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장 (기획예산과)	원안가결	3
3	9-778	오산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5
4	9-779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장 (세정과)	원안가결	7
5	9-780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장 (회계과)	수정가결	9
6	9-781	오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장 (자치행정과)	원안가결	14
7	9-782	오산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16
8	9-783	오산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오산시장 (토지정보과)	원안가결	18
9	9-784	오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오산시장 (문화예술과)	원안가결	20
10	9-785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장 (도시정책과)	원안가결	22
11	9-786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산시장 (안전정책과)	수정가결	24
12	9-787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장 (중앙도서관)	원안가결	30

오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도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9-791호
----------	---------

발의년월일 : 2026년 4월 6일

발의의원 : 전도현 의원

찬성의원 : 이상복, 조미선 의원

□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6. 4. 6.

나. 제출자 : 전도현 의원

다. 회부일자 : 2026. 4. 13.

라. 심사일자

- 제1차 (2026. 4. 14.)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 제2차 (2026. 4. 15.) : 축조심사
- 제3차 (2026. 4. 16.) : 의결

□ 제안이유(제안설명 : 전도현 의원)

-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비용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설치 의무 면제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관련 조항 신설 (안 제22조의2)
-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변경 (안 제23조제2항)

□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정일곤)

- 본 조례안은 일정요건을 갖추고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발의됨.
- 안 제22조의2에서 “비용납부자에 대한 설치의무 면제” 규정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및 제10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등)에서 정하고 있는 주차장 무상사용 등에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 안 제23조제2항제3호에서 토지가액의 산출 기준을 정비한 것은 기준의 명확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질의 및 답변 : 생략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오산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9-777호
----------	---------

제출년월일 : 2026년 4월 3일

제출자 : 오산시장

□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6. 4. 3.

나. 제출자 : 오산시장

다. 회부일자 : 2026. 4. 13.

라. 심사일자

- 제1차 (2026. 4. 14.)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 제2차 (2026. 4. 15.) : 축조심사
- 제3차 (2026. 4. 16.) : 의결

□ 제안이유(제안설명 : 기획재정국장)

- 2026. 1. 1. 字 조직개편으로 기획재정국이 신설됨에 따라 기획재정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신규 구성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원회를 운영·관리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신규 추가 (안 제4조)
 - 기획재정국장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정일곤)

- 본 조례안은 2026. 1. 1. 日 오산시 조직개편을 반영하여 위원회 위원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 및 답변 : 생략

심사결과 : 원안가결

오산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9-778호
----------	---------

제출년월일 : 2026년 4월 3일

제출자 : 오산시장

□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6. 4. 3.

나. 제출자 : 오산시장

다. 회부일자 : 2026. 4. 13.

라. 심사일자

- 제1차 (2026. 4. 14.)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 제2차 (2026. 4. 15.) : 축조심사
- 제3차 (2026. 4. 16.) : 의결

□ 제안이유(제안설명 : 기획재정국장)

- 「상업등기법」의 개정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조례의 용어 통일을 위하여 3개 조례를 일괄 개정, 입법 경제성과 행정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오산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안 제2조)
-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안 제16조)
-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안 제2조)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정일곤)

- 본 조례안은 「상업등기법」(법률 제8582호, 2008. 1. 1. 시행)이 제정 시행되면서, 기존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던 '등기부'라는 용어를 '등기사항증명서'라는 용어로 정비함에 따라, 우리시 자치법규 중 법령과 불부합하는 관련 용어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 및 답변 : 생략

심사결과 : 원안가결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9-779호
----------	---------

제출년월일 : 2026년 4월 3일

제출자 : 오산시장

□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6. 4. 3.

나. 제출자 : 오산시장

다. 회부일자 : 2026. 4. 13.

라. 심사일자

- 제1차 (2026. 4. 14.)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 제2차 (2026. 4. 15.) : 축조심사
- 제3차 (2026. 4. 16.) : 의결

□ 제안이유(제안설명 : 기획재정국장)

-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과 감면 기간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율 및 감면 기간 정비 (안 제5조)

□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정일곤)

-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과 감면 기간을 정비하는 사항임.

-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의 재산세 감면은 지역 균형 발전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유인책으로 작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 경감률을 적용한 본 조례안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
- 추후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고, 창업기업을 유치하였을 때 지방세 감면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 및 답변 : 생략

심사결과 : 원안가결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9-780호
----------	---------

제출년월일 : 2026년 4월 3일

제 출 자 : 오 산 시 장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6. 4. 3.

나. 제 출 자 : 오산시장

다. 회부일자 : 2026. 4. 13.

라. 심사일자

- 제1차 (2026. 4. 14.)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 제2차 (2026. 4. 15.) : 축조심사
- 제3차 (2026. 4. 16.) : 의결

제안이유(제안설명 : 기획재정국장)

- 세교1지구 은빛개울공원 부설주차장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와 양질의 주차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골자

- 은빛개울공원 제1, 2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신설 (안 별표1, 별표2)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정일곤)

- 본 조례안은 세교1지구 은빛개울공원 부설주차장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 및 답변 : 생략

심사결과 : 수정가결

수정발의 : 조미선 의원(대표발의)

수정이유

-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은빛개울공원 제1부설주차장의 야간 무료 개방 시간을 수정함.

주요골자

- 은빛개울공원 제1부설주차장의 야간 무료 개방 시간을 수정 (안 별표2)
(개정안) 21:00 ~ 익일 07:00
→ (수정안) 23:00 ~ 익일 09:00

수정안 : 별첨

별첨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미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9-780-1호 (원안 9-780)
----------	-------------------------

발의년월일 : 2026년 4월 15일

발의의원 : 조미선, 전도현, 송진영,
전예슬 의원

수정이유

-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은빛개울공원 제1부설주차장의 야간 무료 개방 시간을 수정함.

주요골자

- 은빛개울공원 제1부설주차장의 야간 무료 개방 시간을 수정 (안 별표2)
(개정안) 21:00 ~ 익일 07:00
→ (수정안) 23:00 ~ 익일 09:00

수정안 : 별첨

【별첨】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 2 제6호 은빛개울공원 제1부설주차장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은빛개울공원 제1주차장에 한해 야간 무료 개방(23:00~익일09:00)을 적용한다

수정안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p>[별표 2]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 시설 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p> <p>1. ~ 5. (생략)</p> <p>6. 은빛개울공원 제1부설주차장 (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head> <tr> <th colspan="2">1회 주차요금</th> <th rowspan="2">1일 최대 주차요금</th> <th rowspan="2">월 정기 주차요금</th> <th rowspan="2">토·일요일, 공휴일</th> </tr> <tr> <th>처음 2시간 기준</th> <th>2시간 초과 이후 (매 10분 당)</th> </tr> </thead> <tbody> <tr> <td>무료</td> <td>300</td> <td>-</td> <td>-</td> <td>유료</td> </tr> </tbody> </table> <p>※ 은빛개울공원 제1주차장에 한해 야간 무료 개방(21:00~익일07:00)을 적용한다</p>	1회 주차요금		1일 최대 주차요금	월 정기 주차요금	토·일요일, 공휴일	처음 2시간 기준	2시간 초과 이후 (매 10분 당)	무료	300	-	-	유료	<p>[별표 2]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 시설 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p> <p>1. ~ 5. (개정안과 같음)</p> <p>6. 은빛개울공원 제1부설주차장 (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head> <tr> <th colspan="2">1회 주차요금</th> <th rowspan="2">1일 최대 주차요금</th> <th rowspan="2">월 정기 주차요금</th> <th rowspan="2">토·일요일, 공휴일</th> </tr> <tr> <th>처음 2시간 기준</th> <th>2시간 초과 이후 (매 10분 당)</th> </tr> </thead> <tbody> <tr> <td>무료</td> <td>300</td> <td>-</td> <td>-</td> <td>유료</td> </tr> </tbody> </table> <p>※ 은빛개울공원 제1주차장에 한해 야간 무료 개방(23:00~익일09:00)을 적용한다</p>	1회 주차요금		1일 최대 주차요금	월 정기 주차요금	토·일요일, 공휴일	처음 2시간 기준	2시간 초과 이후 (매 10분 당)	무료	300	-	-	유료
1회 주차요금		1일 최대 주차요금				월 정기 주차요금	토·일요일, 공휴일																		
처음 2시간 기준	2시간 초과 이후 (매 10분 당)																								
무료	300	-	-	유료																					
1회 주차요금		1일 최대 주차요금	월 정기 주차요금	토·일요일, 공휴일																					
처음 2시간 기준	2시간 초과 이후 (매 10분 당)																								
무료	300	-	-	유료																					
<p>7. (생략)</p>	<p>7. (개정안과 같음)</p>																								

오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9-781호
----------	---------

제출년월일 : 2026년 4월 3일

제출자 : 오산시장

□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6. 4. 3.

나. 제출자 : 오산시장

다. 회부일자 : 2026. 4. 13.

라. 심사일자

- 제1차 (2026. 4. 14.)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 제2차 (2026. 4. 15.) : 축조심사
- 제3차 (2026. 4. 16.) : 의결

□ 제안이유(제안설명 : 자치행정국장)

-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에만 시간외근무를 제한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예규와 동일하게 규정을 정비하고, 생일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직원의 복지증진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시간외근무 제한 규정 정비 (안 제24조제17항)
 - 육아시간 사용과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 생일 특별휴가 신설 (안 제24조제18항)
- 개정 전 생일이 지난 사람에 대한 경과조치 (안 부칙 제2조)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정일곤)

- 본 조례안은 시간외근무 제한 규정을 행정안전부 예규와 동일하게 정비하는 한편, 생일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 및 답변 : 생략

심사결과 : 원안가결

오산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9-782호
----------	---------

제출년월일 : 2026년 4월 3일

제출자 : 오산시장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6. 4. 3.

나. 제출자 : 오산시장

다. 회부일자 : 2026. 4. 13.

라. 심사일자

○ 제1차 (2026. 4. 14.)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 제2차 (2026. 4. 15.) : 축조심사

○ 제3차 (2026. 4. 16.) : 의결

제안이유(제안설명 : 자치행정국장)

○ 남촌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이전에 따라 신규 청사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골자

○ 남촌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수정 (안 별표)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정일곤)

○ 본 조례안은 남촌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이전에 따라 신규 청사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 및 답변 : 생략

심사결과 : 원안가결

오산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9-783호
----------	---------

제출년월일 : 2026년 4월 3일

제출자 : 오산시장

□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26. 4. 3.
- 나. 제출자 : 오산시장
- 다. 회부일자 : 2026. 4. 13.
- 라. 심사일자
 - 제1차 (2026. 4. 14.)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 제2차 (2026. 4. 15.) : 축조심사
 - 제3차 (2026. 4. 16.) : 의결

□ 제안이유(제안설명 : 자치행정국장)

- ‘도-시-안전전세관리단(중개업자)’ 협력을 통하여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오산시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오산시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안전전세 관리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제11조)
- 운영협의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 제14조)
- 관리단 교육, 활동 실적 평가 및 포상,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 제17조)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정일곤)

- 본 조례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에서 민·관이 협력하여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질의 및 답변 : 생략

심사결과 : 원안가결

오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9-784호
----------	---------

제출년월일 : 2026년 4월 3일

제출자 : 오산시장

□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6. 4. 3.

나. 제출자 : 오산시장

다. 회부일자 : 2026. 4. 13.

라. 심사일자

- 제1차 (2026. 4. 14.)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 제2차 (2026. 4. 15.) : 축조심사
- 제3차 (2026. 4. 16.) : 의결

□ 제안이유(제안설명 : 경제문화국장)

- 오산시 생활문화센터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 기준을 정립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시설의 설치 및 기능 (안 제3조·제4조)
- 운영시간 및 휴관 (안 제5조)
- 사용신청 및 사용허가 (안 제6조·제7조)
- 사용 제한·취소 및 사용자의 의무 (안 제8조·제9조)
- 사용료 징수·감면·반환 (안 제10조)
- 프로그램 운영 및 수강료 징수 (안 제11조)
- 센터 운영·관리의 위탁 (안 제12조)

□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정일곤)

-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서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주민의 자발적 문화활동 장려와 지역의 문화적 가치 고양을 위하여 오산시 생활문화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질의 및 답변 : 생략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9-785호
----------	---------

제출년월일 : 2026년 4월 3일

제출자 : 오산시장

□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6. 4. 3.

나. 제출자 : 오산시장

다. 회부일자 : 2026. 4. 13.

라. 심사일자

- 제1차 (2026. 4. 14.)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 제2차 (2026. 4. 15.) : 축조심사
- 제3차 (2026. 4. 16.) : 의결

□ 제안이유(제안설명 : 도시주택국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관한 규정 추가 신설 및 단서 조문 개정 (안 제17조)
-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조항의 근거법령 수정 (안 제50조)
-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 중 주민 재열람공고 대상 조항 신설 (안 제50조의2)

□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정일곤)

-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 법령 근거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5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관한 규정을 추가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질의 및 답변 : 생략

□ 심사결과 : 원안가결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9-786호
----------	---------

제출년월일 : 2026년 4월 3일

제출자 : 오산시장

□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6. 4. 3.

나. 제출자 : 오산시장

다. 회부일자 : 2026. 4. 13.

라. 심사일자

- 제1차 (2026. 4. 14.)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 제2차 (2026. 4. 15.) : 축조심사
- 제3차 (2026. 4. 16.) : 의결

□ 제안이유(제안설명 : 시민안전국장)

-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
- 단장 임명 절차 및 재해보상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조직 편성을 현행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직 및 운영 체계의 법적 안정성 확보 (안 제1조~제6조)
-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기능 강화 (안 제7조)
- 재난 환경 변화에 따른 임무 다각화 (안 제8조)
- 재해보상 체계 법제화 (안 제16조, 별표)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정일곤)

- 현재 지역자율방재단에 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등 구체적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오산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및 정비하고자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안 제6조(해임 및 해촉)의 경우, 제1항에서 단장의 해임사유를, 제2항에서 단원의 해촉 사유를 각각 규정하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를 단원의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해임 및 해촉사유에 관하여, 단장과 단원에게 특별히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고, 특히 단원의 경우에 대해서만 타 지자체 전출을 해촉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크지 않으므로, 행정안전부 참고 조례안 및 타 지자체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됨.

질의 및 답변 : 생략

심사결과 : 수정가결

수정발의 : 조미선 의원(대표발의)

수정이유

- 단원의 임기를 정하고, 단장의 해임사유와 단원의 해촉사유가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수정함.

주요골자

- 단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함(안 제5조제5항)
- 단장의 해임 사유에 타 지역 전출 사유를 신설(안 제6조제1항)

수 정 안 : 별첨

별첨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미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9-786-1호 (원안 9-786)
----------	-------------------------

발의년월일 : 2026년 4월 15일

발의의원 : 조미선, 전도현, 송진영,
전예슬 의원

수정이유

- 단원의 임기를 정하고, 단장의 해임사유와 단원의 해촉사유가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수정함.

주요골자

- 단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함(안 제5조제5항)
- 단장의 해임 사유에 타 지역 전출 사유를 신설(안 제6조제1항)

수정안 : 별첨

【별첨】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5항 중 “단장·부단장·사무국장·동대표”를 “단장·부단장·사무국장·동대표·단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

수정안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p>제5조(임원의 임무 등) ① ~ ④ (생략)</p> <p>⑤ <u>단장·부단장·사무국장·동대표</u> 등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제6조(해임 및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p> <p>1.·2. (생략)</p> <p><u><신 설></u></p> <p>3. (생략)</p> <p>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4. <u>단원이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u></p> <p>5. (생략)</p>	<p>제5조(임원의 임무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u>단장·부단장·사무국장·동대표·단원</u> ----- -----.</p> <p>제6조(해임 및 해촉) ① ----- ----- -----.</p> <p>1.·2. (제정안과 같음)</p> <p>3. <u>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u></p> <p>4. (제정안 제3호와 같음)</p> <p>② ----- ----- -----.</p> <p>1. ~ 3. (제정안과 같음)</p> <p><u><삭 제></u></p> <p>4. (제정안 제5호와 같음)</p>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9-787호
----------	---------

제출년월일 : 2026년 4월 3일

제출자 : 오산시장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6. 4. 3.

나. 제출자 : 오산시장

다. 회부일자 : 2026. 4. 13.

라. 심사일자

○ 제1차 (2026. 4. 14.)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 제2차 (2026. 4. 15.) : 축조심사

○ 제3차 (2026. 4. 16.) : 의결

제안이유(제안설명 : 중앙도서관장)

○ 청학도서관 신청사 이전 개청에 따른 도서관 소재지 변경 사항 규정 및 문구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

주요골자

○ 청학도서관 소재지 변경 (안 별표)

○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 변경 (안 제16조)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정일곤)

○ 본 조례안은 청학도서관 신청사 이전 개청에 따른 도서관 소재지 변경 사항 규정 및 문구 일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 및 답변 : 생략

심사결과 : 원안가결